

입법예고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농촌공간계획과)

1. 개정이유

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농촌
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799호,
2026. 6. 16. 공포, 12. 17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 및 제외 요건 신설(안 제3조)

중전 "농촌위해시설"의 명칭을 "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"로 변경하고,
대기·수질 배출허용기준,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
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.

나. 자치구 관련 조문 정비(안 제7조, 제10조, 별표, 별지서식)

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, 주민
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
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농촌위해시설)”을 “(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허용기준,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,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·처리시설·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1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)에 따른 처리시설(「축산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)

2.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(통합특별시·광역시의 군수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제6조 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”을 “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영 제17조제1항”을 “영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영 제21조제2항”을 “영 제23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통합특별시장”으로, “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는 영 제21조제2항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농촌위해시설”을 “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”로 한다.

별표 제7호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,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우체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2호 중 “시·군”을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·제13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·제14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라목 중 “시장·군수”를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제5호 중 “시장·군수”를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통합특별시장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, 광역시”로, 같은 서식 중 “시·군”을 “시·군·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
신청인	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	주소	전화번호
주민협의회	구성원 수		
	대표자	성명	생년월일
		주소	전화번호
	운영목적		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.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.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·구성원의 명부 4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기안·결재	➔	승인 통보
신청인	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	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	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		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농촌위해시설) 법 제2조제14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·철거·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1. 2. (생략) 3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. 다만,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)에 따른 처리시설(「축산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) 및 공공처리시설(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)은 제외하되,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,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	제3조(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
산시설·처리시설·공공처리
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4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
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물
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허용
기준,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
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
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
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환경
중점관리시설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제3호의 시설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
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보지
아니한다. 다만, 「악취방지
법」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
허용기준, 주민의 삶의 질 및 인
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
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·처
리시설·공공처리시설은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1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별
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

	<u>8호3)에 따른 처리시설(「축산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)</u> <u>2.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</u>
제5조(농촌협약의 신청) <u>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/u> 1. ~ 4. (생략)	제5조(농촌협약의 신청) <u>시장·군수(통합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군수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-</u> 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주민협정 인가 신청서) 「<u>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</u>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	제6조(주민협정 인가 신청서) --- ----- ----- ----- <u>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(주민협의회 설립 승인)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(이하 “협정체결자”라 한다)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	제7조(주민협의회 설립 승인) - ----- ----- ----- -----

회(이하 “주민협의회”라 한다)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9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계획 승인 신청서)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
제10조(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)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와 「제주특별자치

-----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9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계획 승인 신청서) 영 제18조제1항 -----

-----.

제10조(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) ① 영 제23조의2제1항 -----

-----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통합특별시장-----
----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---

[illegible]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농
촌환경중점관리시설-----

